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법주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임영은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5년 3월 4일

나. 회부일자 : 2025년 3월 5일

3. 제안이유

고령운전자의 신체기능 및 운전 능력 저하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증가 추세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재정지원을 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안 제4조)

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안 제5조)

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재정지원(안 제6조)

바. 재정지원금 반환(안 제7조)

5. 검토내용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 적합성

- 충북은 2024년도부터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이제 전국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사회를 지나 명실상부한 초고령사회가 되었음.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역시 갈수록 늘어나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³⁾
- 고령운전자의 신체 및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교통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자 각 지자체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추진 실적이 미진했던 실정임.
- * 충북 도내 최근 3년간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평균 비율: 1.76%
(2022년: 1.9%, 2023년: 1.8%, 2024년: 1.6%)
-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와 재정 지원을 통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증진해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현재 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12개 시·도(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서울,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충남)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교통안전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조례안의 제정이

1) "충북 음주운전 줄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늘었다", 굿모닝충청(2024. 9. 25.)

"서울시청역 사고 고령운전자 논란 재점화, 충북 하루 평균 4건 발생", 충청매일(2024. 7. 2.)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제도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충청타임즈(2024. 5. 15.)

"충청권 고령운전자 현주소, 충청권 자진면허 반납률 저조". 충청투데이(2024. 1. 12.)

"충청권 고령자 교통사고 3년 새 21%↑, 현실적 대안 절실". 대전일보(2025. 2. 3.)

「교통안전법」 등 다른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음.

나. 주요 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5조	사업(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홍보 등)
제2조	정의	제6조	재정지원 등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7조	지원금의 반환
제4조	실태조사	부 칙	

○ 조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뜻을 규정함.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였는데, 7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지역(세종, 인천, 전남, 전북)과 비교할 때 사업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고령운전자교통사고 현황,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교재보급 등 교육과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각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는 안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

다. 조례의 절차적·기술적 사항

- 조례안 예고(‘25. 3. 6.~‘25. 3. 11.)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 그밖에 조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문 상호 간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조문의 표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방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실태조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등 교육,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재정지원을 규범화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 다만, 본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내 고령운전자가 안전 교육과 면허 반납 등 관련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동기부여 강화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특히 면허

반납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등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생계형 고령운전자에게는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설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면의 정책 보완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